

항목: 학생

발행: 2009-07-03

번호: **A-601**

주제: 과외활동, 클럽 및 조직

페이지: 1 중 1

변경 사항 개요

본 규정은 2007년 2월 15일 자 규정 A-601을 대체합니다. 본 규정은 스포츠 외의 학생 단체 및 클럽의 결성 절차와 관련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요건에 대한 개요를 담고 있습니다.

변경 사항:

- 연락처 변경

개요

본 규정은 비체육 학생 단체 및 클럽의 형성 절차와 관련하여 반드시 따라야 할 요건에 대한 개요를 담고 있습니다. 본 규정은 2007년 2월 15일 자 규정 A-601을 대체합니다.

I. 절차

- A. 초중급 학교,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평등 이용법(Equal Access Act)과 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단체와 클럽, 및 정치, 종교, 철학적 단체를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B. 학생 클럽 또는 단체의 회원 자격은 인종, 피부색, 신념, 종교, 연령, 국적, 장애, 시민권, 결혼 여부, 성별 또는 성적 경향과는 상관없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모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.
- C. 학생 클럽 및 학생 단체는 학교장의 총괄적인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. 그 어떤 학생 단체 또는 클럽 활동도 학교장의 승인이 없는 학교, 교내 또는 학교 후원 모임에서 실시될 수 없습니다.
- D. 각 학교는 클럽 및 단체 설립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부합하는 별도 정책 또는 절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.
- E. 학생 클럽 및/또는 단체가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:
- 관심 있는 학생 집단에 의해 시작되어야 함.
 - 학교 교육 목표와 부합하는 목적이 있어야 함.
 - 자격증을 보유한 교육청 교육자인 지도 교사가 있어야 함.
 - 학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.
 - 설립 인가 과정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될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함.
- F. 지도 교사는 학생 클럽 또는 단체와의 상담 후 학교장이 임명합니다.
- G. 학생 클럽과 단체의 모든 모임이나 활동에 담당 교사 또는 교장이 지명한 교직원이 참석해야만 합니다.
- H. 모든 학생 클럽 또는 단체는 최소한 단체의 목적, 회원 자격, 임원의 책임, 선거 과정 및 탄핵 절차를 규정하는 정관이나 조례를 만들어 보관해야 합니다.
- I. 학생 클럽 및 단체는 회비나 어떤 형태의 가입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J. 교내에서는 갱단을 비롯한 비밀 결사, 비밀 클럽 및 비밀 단체 결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.
- K. 학생 클럽 또는 활동에 의한 모든 모금은 교육감 규정 A-610을 준수해야 합니다.

II. 문의

본 규정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십시오:

전화:
212-374-6807

Office of Youth Development
N.Y.C. Department of Education
52 Chambers St - Room 218
New York, NY 10007

팩스:
212-374-5751